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 3 조 2(부속교육기관) 본 대학에는 국제평생교육원을 둔다. 국제평생교육원의 세부규칙은 별도로 정한다.</p>	<p>제 3 조 2(부속교육기관) 본 대학에는 국제평생교육원, 국제어학원을 둔다. 국제평생교육원과 국제어학원의 세부규칙은 별도로 정한다.</p> <p>부칙</p> <p>①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